16학년도 상반기
행정감사 사례집
- 분야별 -

2016.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 행정지원과)

CONTENTS

Ⅰ 제1장 수업 · 시험관리 분야 ····· 1

Ⅱ 제2장 학생 · 학적관리 분야 ····· 4

Ⅲ 제3장 복무 · 서무관리 분야 ····· 6

Ⅳ 제4장 보안관리 분야 ····· 8

Ⅴ 제5장 회계관리 분야 ····· 10

Ⅵ 제6장 물품 · 국유재산관리 분야 ····· 12

제 1 장

수업 · 시험 관리 분야

1.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편성기준에 따르면 수강인원이 21명 이상이면 시험실당 감독관 2명, 71명 이상이면 시험실당 감독관 3명을 배치하여 시험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1학기 ~ 2학기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편성 시 수강인원이 21명 이상인데도 감독관을 1명을 편성하고, 71명 이상인데도 감독관을 2명 편성하는 등 총 25반에 대하여 25명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시험 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2. 출석수업시험 관리요원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 시험 관리요원을 편성함에 있어 시험실 수가 2~5실인 경우에는 2명, 6~10실인 경우에는 3명을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 ~ 2016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을 매회 3교시까지 실시하면서, 관리요원 편성 시 시험실 수가 6~10실인 교시의 경우에는 3명을, 2~5실인 교시의 경우에는 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3교시 중 최대 시험실 수인 6~10실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요원 3명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함

이에 따라, 시험실 수가 2~5실인 교시에도 1명 초과한 3명을 관리요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총 35명을 초과 운영하여 관리수당 1,07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출석수업 시간강사 위촉서류 미구비

《지적 1건》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대학의 전임교원은 재직증명서, 그 외 시간강사는 이력서, 최종학위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강의 교과목과 관련된 분야 재직(경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2학기 미디어영상학과 3학년 방송기획제작의기초 시간강사로 위촉한 △△△ 등 9명의 시간강사에 대하여 관련 첨부서류 징구 없이 위촉한 사실이 있음

4. 각종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부적정

《지적 1건》

불가피한 사유로 각종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결시사유 인정범위는 법정전염병(본인의 질병) 국외출장(공무상 국외출장), 비상근무(공무원의 비상근무) 등으로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 및 2013학년도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 2학기 중간시험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처리 승인 과정에서,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연간 6회 이상 시행하는 시험(신HSK)”을 응시한 중어중문학과 △△△ 등 2명에 대해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을 승인하여 성적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제 2 장

학생 · 학적 관리 분야

1. 교내 근로장학생 선정 부적정

《지적 2건》

교내 근로장학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장학생 수혜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임원 학비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5 ~ 2016학년도 교내근로장학생 관리 운영 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1학기 학생회임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행정학과 △△△을 '2015학년도 1학기 근로봉사활동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생 중도 포기 이전까지 약 3개월간(2015. 3. 1. ~ 2015. 5. 13.) 총 2,177,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학생회임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국문학과 ▲▲▲을 '2016학년도 1학기 근로봉사활동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2016. 3월 ~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봉사활동 장학금 총 1,940,000원(3월 : 970,000원, 4월 : 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학생주소록 관리 부적정

《지적 2건》

학생주소록을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사용(열람)하는 교직원에게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주소록 사용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 후 사용 종료된 주소록은 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1조 및 학생주소록 관리 지침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학생과로부터 총 9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학생과로부터 총 7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

제 3 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1.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지적 1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8.02.14. 이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업무를 우리대학이 수탁 받아 해당 시험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바, 수탁 받은 업무에 필요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위탁한 기관에 예산을 요구하여 운행함이 마땅하므로, 교직원의 공용차량 이용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이용하여야 함	
근 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2년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관련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지역대학의 공용차량을 시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 34회(독학사 답안지 인계 15회, 독학사 시험 유인물배부 및 업무협의 8회, 독학사 답안지 파쇄 10회, 독학사시험지 운회송 1회)에 걸쳐 32일 5시간 정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제 4 장

보안관리 분야

1. 문서보안 취급 및 관리 소홀

《지적 1건》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소각 용해 등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비밀의 파기가 끝나면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파기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급기관은 매월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소유비밀문서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8호, 2013.5.13) 제44조, 제56조 및 제74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13년부터 분임보안담당관(지역대학장)의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13년~'16년 생산한 시설방호 계획 수립을 대외비 문서로 취급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13년~'14년 수신한 보안업무 추진 계획 알림과 '12년 생산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및 '13년~'15년 생산한 시설방호 계획 수립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일 뿐 아니라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 집행자 및 입회자 확인을 동일인으로 하였으며, '13년부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일반보안 진단 시 대외비 보유현황(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보안교육 실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 5 장

회계관리 분야

1.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 2건》

입시수당은 신·편입생 정시모집 등 입시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3~2016학년도 입학전형 업무 추진계획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출장, 공가, 연가 등으로 입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 등 6명에게 총 309,000원의 입시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출장·공가 등으로 입시업무를 전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 등 5명에게 총 130,000원의 입시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 6 장

물품 · 국유재산 관리 분야

1. 물품관리대장 물품 미등재

《지적 1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인 물품관리대장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구매한 물품 지문인식기 등 9개 품목(수량 62, 취득금액 15,541,450원)에 대하여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